



전자금융 이체한도 추가 약정서 (업무협약 체결 이용자용)

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

이용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(이하 “카카오뱅크”라 합니다)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약정합니다.

제 1 조 목적

본 약정서는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고 합니다)가 “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”에서 정한 전자금융 보안등급 1 등급을 부여받았음에도 1 등급 이체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카카오뱅크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자금이체한도에 관해 추가 약정을 함으로써 이체한도를 증액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한도증액 신청

- ① 이용자는 “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”에서 정한 1 등급 이체한도(1 회 1 억 원, 1 일 5 억 원)를 초과하여 이체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, 이 약정서에 동의를 한 후 한도증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약정서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한도증액 금액은 최대 1 회 10 억 원, 1 일 20 억 원으로 합니다.
-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이체한도가 적용되는 기간(이하 “한도증액기간”이라 합니다)은 신청일로부터 카카오뱅크와 체결한 업무협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.
- ④ 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1. 증액할 이체한도의 종류(1 회 이체한도, 1 일 이체한도)
 2. 증액 후 이체한도 금액
 3. 한도증액기간
- ⑤ 제 3 항의 한도증액기간이 경과하면 이체한도는 한도증액 전의 이체한도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.

제 3 조 한도증액 신청의 철회 및 제한

- ① 이용자가 이 약정서에 따라 한도증액 신청을 했더라도, 이용자는 한도증액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카카오뱅크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증액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가 이 약정서에 따라 한도증액 신청을 했더라도, 카카오뱅크는 보안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한도증액에 의한 이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카카오뱅크가 한도증액에 의한 이체를 제한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

제 4 조 한도증액 후 이체

이용자가 한도증액기간 중에 이 약정서에 따라 증액된 한도 내에서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, 이용자는 “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” <별표 1>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, 카카오뱅크는 이용자에게 추가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이용자의 의무

이용자는 비밀번호 노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 접근매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제 6 조 약정서의 변경

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의 약관의 변경조항을 준용합니다.

제 7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

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, 그 외 상품약관 및 상품별 특약이 적용됩니다.

년 월 일
성명 : (서명 / 인)